

인사규정

제12조(초임호봉)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4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별표 3] 직급별 호봉(제11조 관련)

직급별 호봉

급 별	호 봉	
	최 저	최 고
1급	1	40
2급	1	40
3급	1	40
4급	1	40
5급	1	40
6급	1	40
7급	1	40

[별표 4] 경력 환산 기준표(제12조 관련)

경력 환산 기준표(제12조, 제24조 관련)

적 용 대 상	적 용 율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 <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input type="checkbox"/> 군복무기간	100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은행법에 의한 은행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input type="checkbox"/> 상장기업체	80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회사 종사자	60 %
<input type="checkbox"/> 일반기업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체)	50 %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각의 경력을 합산하여 환산한다. 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 경력환산 연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사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 후 실제 근무 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보수규정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11조(기본급) ① 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인사규정」 제12조에서 부여한 초임호봉을 별표 4에 따라 재산정한 호봉급을 지급한다.

③ 겸직, 직무대리 발령시의 기본급은 그중 상위직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외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연차휴가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평가급
6. 위험수당
7. 가족수당
8. 일·숙직수당
9. 장기근속수당
10. 대우수당
11. 보전수당
12. 책임자수당
13. 업무대행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2] 직원기본급표(제11조 관련)

직 원 봉 급 표(월 기준)

(단위 :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2,992,000	2,662,000	2,417,000	2,333,000	2,082,000	2,021,000	1,970,000
2호봉	3,090,000	2,759,000	2,511,000	2,428,000	2,168,000	2,086,000	2,032,000
3호봉	3,184,000	2,850,000	2,600,000	2,522,000	2,251,000	2,148,000	2,087,000
4호봉	3,288,000	2,949,000	2,696,000	2,620,000	2,343,000	2,238,000	2,152,000
5호봉	3,387,000	3,046,000	2,790,000	2,718,000	2,433,000	2,326,000	2,213,000
6호봉	3,493,000	3,148,000	2,892,000	2,821,000	2,531,000	2,424,000	2,277,000
7호봉	3,602,000	3,251,000	2,997,000	2,926,000	2,629,000	2,520,000	2,344,000
8호봉	3,705,000	3,352,000	3,096,000	3,027,000	2,727,000	2,613,000	2,406,000
9호봉	3,804,000	3,450,000	3,194,000	3,127,000	2,820,000	2,700,000	2,463,000
10호봉	3,906,000	3,549,000	3,292,000	3,222,000	2,909,000	2,787,000	2,538,000
11호봉	4,001,000	3,642,000	3,384,000	3,316,000	2,998,000	2,872,000	2,611,000
12호봉	4,099,000	3,739,000	3,480,000	3,413,000	3,085,000	2,958,000	2,688,000
13호봉	4,186,000	3,823,000	3,564,000	3,497,000	3,163,000	3,033,000	2,757,000
14호봉	4,275,000	3,914,000	3,652,000	3,587,000	3,246,000	3,115,000	2,833,000
15호봉	4,358,000	3,997,000	3,734,000	3,670,000	3,322,000	3,189,000	2,904,000
16호봉	4,431,000	4,068,000	3,815,000	3,743,000	3,391,000	3,262,000	2,969,000
17호봉	4,500,000	4,137,000	3,880,000	3,817,000	3,461,000	3,331,000	3,034,000
18호봉	4,569,000	4,208,000	3,953,000	3,891,000	3,532,000	3,399,000	3,100,000
19호봉	4,636,000	4,276,000	4,024,000	3,965,000	3,602,000	3,468,000	3,166,000
20호봉	4,700,000	4,340,000	4,090,000	4,034,000	3,670,000	3,534,000	3,277,000
21호봉	4,757,000	4,401,000	4,155,000	4,100,000	3,735,000	3,596,000	3,287,000
22호봉	4,811,000	4,458,000	4,217,000	4,166,000	3,797,000	3,658,000	3,344,000
23호봉	4,862,000	4,513,000	4,275,000	4,225,000	3,854,000	3,716,000	3,399,000
24호봉	4,910,000	4,568,000	4,333,000	4,285,000	3,911,000	3,772,000	3,452,000
25호봉	4,961,000	4,622,000	4,391,000	4,347,000	3,971,000	3,833,000	3,509,000
26호봉	5,011,000	4,677,000	4,449,000	4,403,000	4,031,000	3,890,000	3,566,000
27호봉	5,061,000	4,731,000	4,507,000	4,409,000	4,089,000	3,948,000	3,622,000
28호봉	5,111,000	4,782,000	4,562,000	4,472,000	4,145,000	4,004,000	3,677,000
29호봉	5,158,000	4,834,000	4,614,000	4,589,000	4,201,000	4,057,000	3,729,000
30호봉	5,206,000	4,882,000	4,666,000	4,645,000	4,256,000	4,108,000	3,782,000
31호봉	5,269,000	4,930,000	4,718,000	4,704,000	4,313,000	4,164,000	3,831,000
32호봉	5,330,000	4,978,000	4,769,000	4,761,000	4,368,000	4,219,000	3,879,000
33호봉	5,386,000	5,034,000	4,816,000	4,814,000	4,417,000	4,270,000	3,923,000
34호봉	5,443,000	5,090,000	4,862,000	4,865,000	4,466,000	4,320,000	3,966,000
35호봉	5,499,000	5,146,000	4,919,000	4,915,000	4,514,000	4,368,000	4,008,000
36호봉	5,565,000	5,211,000	4,984,000	4,961,000	4,576,000	4,413,000	4,051,000
37호봉	5,631,000	5,276,000	5,049,000	5,026,000	4,638,000	4,477,000	4,113,000
38호봉	5,697,000	5,341,000	5,114,000	5,091,000	4,700,000	4,541,000	4,175,000
39호봉	5,763,000	5,406,000	5,179,000	5,156,000	4,762,000	4,605,000	4,237,000
40호봉	5,829,000	5,471,000	5,244,000	5,221,000	4,824,000	4,669,000	4,299,000

수 당 지 급 기 준 (제13조 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times\frac{1.50}{209}\times$ 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단,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휴일근무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times\frac{1.50}{209}\times$ 시간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times\frac{2.00}{209}\times$ 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3.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times\frac{0.50}{209}\times$ 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4. 연차수당	○ 통상임금 $\times\frac{1}{209}\times$ 8시간 \times 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5. 평가급	○ 보수월액 \times 개인별 지급률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위험수당	○ 월 20,000원	○ 유해·위험작업에 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에 의한다.
8. 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장기근속수당	○ 지방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준하여 지급 ○ 월 120,000원	○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10. 대우수당		○ 3급 또는 4급에서 8년이상 근속한 자 중 미승진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1. 책임자수당	○ 월 40,000원	○ 지급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12. 업무대행수당	○ 육아휴직자 1인의 업무대행 월 200,000원 한도	○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